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실시계획  
변경/조회 시스템 사용법**

**2023.05.**



**국토안전관리원**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 목 차

## **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

- |      |                  |       |
|------|------------------|-------|
| 1.1.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법령 | p.1~3 |
| 1.2.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 | p.3   |

## **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 2.1. | 안전관리계획서 목록       | p.4     |
| 2.2.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목록 | p.5     |
| 2.3. | 공사개요             | p.6     |
| 2.4. | 정기점검목록           | p.7~9   |
| 2.5.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p.10~13 |

## **3. 안전점검 실시계획 변경/조회**

- |      |                    |         |
|------|--------------------|---------|
| 3.1. | 안전점검 실시계획 변경/조회 방법 | p.14~16 |
|------|--------------------|---------|

# 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

## 1.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법령

### 1.1.1. 안전점검 수행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 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 위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중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 도중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대해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1.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 1.1.3. 안전점검 결과 통보 기한 관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1.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체, 제출시기의 근거



- **제 출 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제출 주체**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사)
- **제출 시기** :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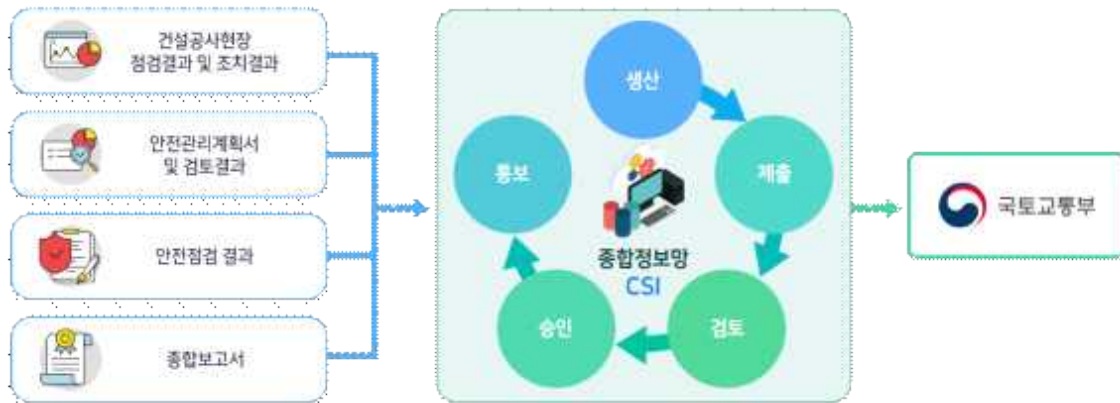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 1.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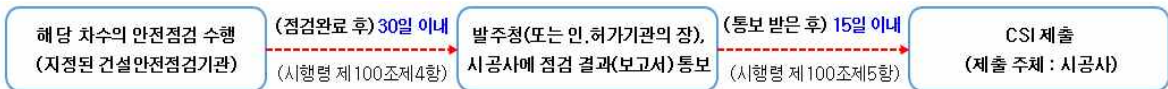
### 1.2.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제출·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제출·검토·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 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시공사**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종합보고서 제외). 아래 사용자 지침서는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승인**을 받은 상태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업무 흐름도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민간공사의 경우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신청)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2.1. 안전관리계획서 목록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은 **시공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 ○ 화면설명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메인 화면에서 상단메뉴에 있는 <b>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b> 을 선택

## 2.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목록

시공사의 사용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가 “발주기관 최초 승인”된 공사명 목록을 조회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의 “발주기관 최초 승인”된 공사 건에 대해서만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가능

### ○ 화면설명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검색기능	공사명 등의 검색조건으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공사 건을 검색
2	신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클릭

### 2.3. 공사개요

**공사명** 버튼을 선택하면 이동하는 화면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시 입력하였던 **공사개요**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입력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 안전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공사개요	⇒ 사전에 제출되었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의 “공사개요” 와 연동되어 자동입력	
공사명	OO 신축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현장 소재지		
공사구분		
토목·건축 구분	건축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사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정기안전점검 실시 항목과 일치)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실제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비고		
제출번호		
진행상태	검토결과 제출완료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진행상태	

※ 안전관리계획서 **최초제출**에 한해 “검토결과 제출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 “공사개요가 변경” 되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업무 흐름 절차)

1. 당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 공사개요서, 조직도 등
-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 **제출 및 승인**
- ↓
3.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변경 제출
- ↓
4.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의 “**검토결과 제출접수**” 시 **항목 변경 완료**



## 2.4. 정기점검목록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에서 담당 현장의 **공사명** 버튼을 선택하면 공사개요 아래 작성하신 **정기점검 실시시기(정기점검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점검목록 (\*\*점검목록 수정 시 진행상태 내역에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③ **점검목록 수정** **진행상태 내역** ④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①	현장조립시 실시계획: 2020-07	현장해체시 실시계획: 2021-03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바리	1차 실시계획: 2020-07	2차 실시계획: 2021-03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흙막이	설치시 실시계획: 2020-04	해체시 실시계획: 2020-06				

🔔 등록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목록 (정기점검 외)

No	점검 종류	점검차수	점검기간	점검기관	제출일	진행상태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② **추가** **목록**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정기점검명	파란색 글씨의 정기점검명을 클릭하면 해당 공사의 차수, 관련 상세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기존에는 추가 버튼을 통해서만 이동 가능)
2	추가	해당 공사의 안전점검 종류 및 차수, 관련 상세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3	점검목록 수정	정기점검 실시시기(정기점검목록)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점검대상, 실시시기, 실시계획 등)
4	진행상태 내역	정기점검 실시시기(정기점검목록)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창 이동 (변경승인 요청 건에 대해 취소 가능)

※ “정기안전점검 실시항목이 변경” 되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업무 흐름 절차)

1.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에서 **점검목록 수정** : 점검대상, 실시시기 등
- ↓
2. **시공사**가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승인 요청(**진행상태 내역에서 확인**)
- ↓
3.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승인(**진행상태 내역에서 확인**)
- ↓
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의 “정기점검목록” 항목 변경 완료

### 2.4.1. 정기점검 실시시기(정기점검목록) 수정/변경 요청

시공사의 사용자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에서 “**점검목록 수정**” 시 점검대상, 실시시기, 실시계획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불러오기 도움말

전체 공사기간(2020-04-30 ~ 2021-08-31)안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점검목록 수정 시 진행상태 내에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② 건축물(지하상가 제외)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양식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구조물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추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건축물 (지하상가 제외)	점검명(구조물명) ③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④			⑤ 추가
	초기점검	yyyy-mm ③	yyyy-mm ③	yyyy-mm ③	yyyy-mm ③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불러오기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시 입력하였던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불러올 수 있는 창으로 이동
2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 종류	당 현장의 안전점검의 건설공사 종류를 선택
3	실시계획	안전점검 차수의 실시계획을 작성
4	점검차수 추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추가(최소 점검차수는 삭제 불가)
5	추가	작성된 양식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에 추가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구조물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삭제
		1차	2차	3차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시	현장해체시		① 삭제
		2020-07	2021-03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바리	1차	2차		삭제
		2020-07	2021-03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흙막이	설치시	해체시		삭제
		2020-04	2020-06		

② 저장 취소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삭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에서 점검대상 행부분 삭제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포함된 행일 경우 삭제 주의)
2	저장	수정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를 저장 및 변경요청

### 2.4.2. 정기점검 실시시기(정기점검목록) 변경 승인/반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사용자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에서 담당 **공사명**을 선택 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정기점검목록 (\*\*점검목록 수정 시 진행상태 내역에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진행상태 내역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시	현장해체시				
		실시계획: 2020-07 실시계획 변경 내역	실시계획: 2021-03 실시계획 변경 내역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바리	1차	2차				
		실시계획: 2020-07 실시계획 변경 내역	실시계획: 2021-03 실시계획 변경 내역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흙막이	설치시	해체시				
		실시계획: 2020-04 실시계획 변경 내역	실시계획: 2020-06 실시계획 변경 내역				

시공사에서 정기점검 실시시기(정기점검목록) **변경 승인요청**을 한 경우 “진행상태 내역” 선택합니다.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

수립대상	점검명	차수	요청 시기	요청일시	요청자소속	요청자명	최종상태
건축물(지하상가 제외)	101동	초기 점검	2021-06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b>변경승인요청</b>  <input type="button" value="승인"/> <input type="button" value="반려"/> </div>
건축물(지하상가 제외)	101동	1차	2020-08				
건축물(지하상가 제외)	101동	2차	2020-12				
건축물(지하상가 제외)	101동	3차	2021-04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천공기	1차	2020-04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천공기	2차	2020-06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1차	2020-07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2차	2021-03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바리	1차	2020-07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바리	2차	2021-03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흙막이	1차	2020-04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흙막이	2차	2020-06				

닫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사용자가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을 확인 후 최종 상태에서 **변경승인요청**에 대해 **승인** 혹은 **반려**를 선택하시면 처리완료됩니다.

## 2.5.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차수별 상세 정보와 첨부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선택) 제출

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종류: 선택  
 ② 정기안전점검 차수: [검색]  
 ③ 점검기간: yyyy-mm-dd ~ yyyy-mm-dd  
 ④ 점검비용: 입력 원 (원)  
 ⑤ 점검기관: 검토기관명: [검색], 책임기술자: [입력]  
 ⑥ 참여기술자: [추가] [삭제]  
 ⑦ 점검결과: 입력  
 ⑧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파일추가] [선택다운로드] [전체다운로드] [선택파일삭제] [전체파일삭제] [목록 초기화]  
 ⑨ 지적사항:  없음  있음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안전점검 종류	제출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를 선택
2	안전점검 차수	제출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차수를 선택 (※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만 활성화)
3	점검기간	해당 차수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기간을 입력
4	점검비용	해당 차수의 안전점검의 비용을 입력
5	점검기관	해당 차수의 안전점검을 수행한 기관 조회 및 책임기술자 입력 (※ 기관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6	참여기술자	제출하고자 하는 결과보고서 내 참여기술자의 명단을 입력
7	점검결과	제출하고자 하는 결과보고서 내 점검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8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하고자 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통합본 파일을 추가
9	지적사항	안전점검 중 지적사항 및 조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선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안전점검

☞ 건설공사 시행 도중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공사 재개 전 수행하는 안전점검

### 2.5.1. 정기안전점검 또는 초기점검 제출

제출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초기점검”일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②안전점검 차수의 돌보기 선택 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앞서 자동 입력되어있던 “정기안전점검 또는 초기점검의 목록(2.4. 참조)” 화면과 동일하며 제출해야 하는 차수의 명칭은 **진한 글씨**로 클릭이 가능합니다.

※ 제출이 완료된 차수의 경우 ‘연한 글씨’로 변경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건축물	공동주택		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OO 공동주택	OO 시공사 (초기) 2021-00	OO 시공사 (중기) 2021-00	OO 시공사 (말기) 2021-00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안전점검 차수별 명칭	제출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차수(명칭, 진한 글씨)를 선택


제출하고자 하는 차수의 명칭을 클릭 시 추가되는 화면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공사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초기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 첨부와 그 수신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공문 수신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공사가 통보받은 공문의 수신일 (별도 수신날인 없을시 공문상 시행일) 입력
2	수신공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공사가 통보받은 공문 첨부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통합본/제출문 첨부 시 반려 처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제5항 참조

## 2.5.2. 지적사항 입력

제출하고자 하는 차수의 지적사항이 “있음”을 선택하는 경우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① 지적사항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checked="" type="radio"/> 있음 입력
② 조치일시	yyyy:mm-dd
③ 조치자	
④ 조치사항	입력
⑤ 조치 결과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파일추가 선택다운로드 전체다운로드 선택파일삭제 전체파일삭제 목록 초기화</p>

항목	화면이름	설명
1	지적사항	해당 차수 안전점검시 발견된 지적사항의 내용을 상세 입력
2	조치일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일자를 입력
3	조치자	해당 지적사항 조치한 담당자(안전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등)를 입력
4	조치사항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입력
5	조치결과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첨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준수)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만 첨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통합본 첨부 시 반려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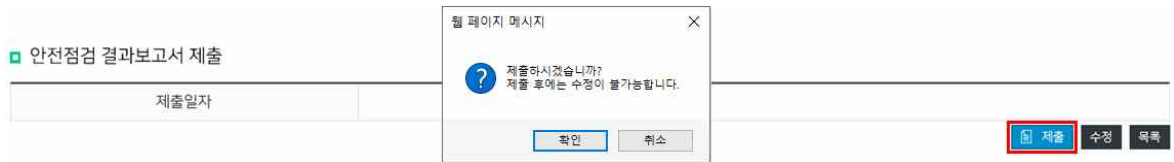
※[지적사항] [조치일시] [조치자] [조치사항] [조치결과서] 란은 안전점검에서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입력 하는 항목입니다.(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반려에 의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2.5.3. 작성완료 후 제출

제출하고자 하는 차수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자료 및 내용이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 맨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 이후, 맨 하단의 버튼이 **“제출”과 “수정”**으로 변경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하고, **“제출”**을 클릭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됩니다.



※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안전점검 실시계획 변경/조회

#### 3.1. 안전점검 실시계획 변경/조회 방법

**시공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사용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에서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변경요청 및 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요청 및 승인하려는 해당 공사명을 조회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Safety Check Result Report Submission) page.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ha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projects. The first row of the table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showing '00 신축공사' (00 New Construction Project).

No	공사명	현장주소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점검기관	시공사	제출일
1	00 신축공사					
2						
3						

#### 3.1.1 안전점검 실시계획 변경/조회(시공사)

**공사명** 버튼을 선택하면 공사개요 하단 정기점검목록에서 수정하려는 점검차수의 “**실시계획 변경/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정기점검목록 (\* 실시계획 변경 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교량(복개 구조물 제외)	w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실시계획: 2021-07 실시계획 변경/조회 제출일: 2022-06-16 제출완료	실시계획: 2021-07 실시계획 변경/조회 제출일: 2022-06-16 제출완료	실시계획: 2021-07 실시계획 변경/조회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을 변경하시려면 "점검 실시계획 변경 요청"의 계획일자를 수정 후 "변경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기점검 실시 시기

현재 점검실시계획	점검실시계획 변경 요청	최종 변경 일시	최종 변경자 소속	최종 변경자명
2022-10	yyyy-mm   변경요청	2022-08-09 14:28:28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

구분	이전 시기	요청 시기	요청일시	요청자소속	요청자명	승인일시	승인자소속	승인자명	최종상태
최초	2021-07	2022-10	2022-08-09 14:26:49						변경취소
1차	2021-07	2022-10	2022-08-09 14:27:10			2022-08-09 14:27:42			반려
2차	2021-07	2022-10	2022-08-09 14:28:06			2022-08-09 14:28:28			승인완료

 닫기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실시계획변경이 최종 완료됩니다.  
(승인여부는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1.1 안전점검 실시계획 승인/반려(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실시계획 변경 요청된 해당 공사명을 조회한 후, "실시계획 변경 요청"된 해당차수를 클릭합니다.

정기점검목록 (※ 실시계획 변경 시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교량 교량(복개 구조물 제외)	w	가시성공사 및 기초공사 사공사(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실시계획: 2021-07 실시계획 변경 요청	실시계획: 2022-10 제출일: 2022-06-16 제출완료	실시계획: 2021-07 실시계획 변경 내역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의 "최종상태" 칸에서 승인 또는 반려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정기점검 실시 시기

현재 점검실시계획	점검실시계획 변경 요청	최종 변경 일시	최종 변경자 소속	최종 변경자명
2021-07	-			

정기점검 실시시기 변경 내역

구분	이전 시기	요청 시기	요청일시	요청자소속	요청자명	승인일시	승인자소속	승인자명	최종상태
최초	2021-07	2022-11	2022-08-09 10:05:48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b>변경승인요청</b>  <input type="button" value="승인"/> <input type="button" value="반려"/> </div>

닫기

- 끝 -